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0

발의연월일: 2020. 6. 22.

발 의 자: 박덕흠 · 홍준표 · 권성동

홍문표ㆍ이철규ㆍ최승재

김석기・김예지・金炳旭

최춘식 · 김도읍 의원

(11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의 폐업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학교급식 축소, 입학식 등 취소에 따른 화훼소비 부진 등),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8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4.7%),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인이 구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축사용지 및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 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
-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 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71조 제1항).
- 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 라.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 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99조 의4제1항).
- 마.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 로 6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 바.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6 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 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 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 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12월 31일----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 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 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 략)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등 ·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 업권 · 어업용 토지등 · 염전 또 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 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 (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 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략)

② ~ ⑧ (생 략)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2026년 12월 3
1일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네인 비শ제)
2026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 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 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 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 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 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 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 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 1. · 2. (생략)
- ② ~ ⑦ (생 략)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105조(부가)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용) ① ---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u>202</u>
<u>6년 12월 31일</u>
·.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세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1. ~ 6. (생략)
- ② (생 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저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
<u>2026년 1</u>
2월 31일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2026년</u> 12월
31일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동일)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동일)